

# 「사회적 거리두기」 방역수칙 행정명령 변경 고시

새로운 일상 준비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예방을 위하여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의거,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.

※ 기존 경상남도 고시 제2022-165호(2022.4.1.)는 본 고시로 대체함

2022년 4월 15일

경상남도지사  
지사의인

1. 기 간 : 2022. 4. 18.(월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

2. 효 력 : 2022. 4. 18.(월) 0시부터

<경과규정 등>

- 경상남도 고시 제2022-165호(2022.4.1.)에 의한 운영시간 제한 조치는 2022.4.18.(월) 05시까지 유효
- 경상남도 고시 제2022-165호(2022.4.1.)에 의한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는 2022.4.24.(일) 24시까지 유효
- 일부 다중이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'실내 취식 금지' 조치는 2022.4.25.(월) 0시부터 해제

3. 주요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변경(해제) 적용

가. 적용대상

다중이용시설 (30종)
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
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실내체육시설 ▲ 목욕장업 ▲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
▲ 식당·카페 ▲ 멀티방 ▲ PC방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내) ▲ 파티룸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
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유원시설(놀이공원·워터파크) ▲ 오락실 ▲ 스포츠경기(관람)장(실외)
▲ 실외체육시설 ▲ 숙박시설 ▲ 키즈카페 ▲ 돌잔치 ▲ 전시회·박람회 ▲ 이·미용업
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▲ 학원 등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
▲ 마트·백화점 등 3,000㎡ 이상 대규모 점포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도서관 ▲ 영화관·공연장
종교시설 및 기타시설(3종)
▲ 종교시설 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

## 나. 처분대상자

- 경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- 적용대상 시설 책임자·종사자 및 이용자
- 운송사업자·종사자, 승객 등
- 경남도 내 모든 모임·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·장소와 주최자 (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) 및 참석자

## 다. 처분내용 :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행정명령 고시 사항

### 라. 주요 방역수칙 요약표 \* 세부내용은 반드시 붙임2, 붙임3, 붙임4 내용 확인

구분	주요 방역수칙
<b>① 공통 방역수칙</b>	
<b>마스크 착용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<b>백신접종 완료자도 실내·실외에서 마스크 착용</b></li> <li>※ 마스크 착용의무 및 제재조치 등 일체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름</li> </ul>
<b>② 모임·행사·집회</b>	
<b>사적 모임</b>	▶ <b>인원 제한 없음</b>
<b>기타 행사·모임</b>	▶ <b>인원 제한 없음</b>
<b>③ 다중이용시설</b>	
* 실내취식 금지(18종 시설) 및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해제	
<b>&lt;취식 금지시설_18종&gt;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노래(코인)연습장 ▲ 실내체육시설 ▲ 목욕장업 ▲ 경륜·경정·경마/카지노(내국인)</li> <li>▲ 멀티방 ▲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▲ 마사지업소·안마소 ▲ 오락실 ▲ 전시회·박람회</li> <li>▲ 이미용업 ▲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▲ 학원 등 ▲ 독서실·스터디카페</li> <li>▲ 영화관·공연장 ▲ 박물관·미술관·과학관 ▲ 도서관 ▲ 상점·마트·백화점 ▲ 종교시설</li> </ul>	
<b>&lt;취식 가능시설_13종&gt;</b>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▲ 유흥시설 등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헌팅포차, 감성주점, 콜라텍·무도장)</li> <li>▲ 식당·카페 ▲ PC방 ▲ 파티룸 ▲ 결혼식장 ▲ 장례식장 ▲ 돌잔치 ▲ 유원시설</li> <li>▲ 실외스포츠경기관람장 ▲ 실외체육시설 ▲ 숙박시설 ▲ 키즈카페 ▲ 국제회의·학술행사</li> </ul>	
▲ 콜센터 ▲ 물류센터	

\* 취식 금지 : 물, 무알콜 음료 제외하고 금지

#### 4. 법적근거

-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 (감염병의 예방조치)  
- 동법 제80조, 제83조, 동법 시행령 제33조, 동법 시행규칙 제42조

#### 5. 처분 당사자는 「행정절차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#### 6.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또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.

#### 7.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

- 1)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0조 제7호(300만원 이하의 벌금)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, 같은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을 중단을 명할 수 있다. 또한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.
- 2)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 될 수 있습니다.

## 8. 소관 부서별 거리두기 담당자 문의처

시설명	담당부서(도)	연락처	비 고
▶ 유흥주점(클럽, 룸살롱 등) ▶ 단란주점 ▶ 헌팅포차 ▶ 식당·카페(일반음식점·휴게음식점·제과점영업), 돌잔치	식품의약과	211-5024	
▶ 콜라텍	예방안전과	211-5414	
▶ 노래연습장 ▶ PC방 ▶ 오락실·멀티방 ▶ 영화관	문화예술과	211-4534	
▶ 방문판매등 직접판매홍보관	일자리경제과	211-3354	
▶ 공연장	문화예술과	211-4544	
▶ 놀이공원, 워터파크	관광진흥과	211-4616	
▶ 실내체육시설, 겨울스포츠시설(스키장, 눈썰매장, 스케이트장)	체육지원과	211-4744	
▶ 결혼식장	가족지원과	211-5256	
▶ 장례식장	노인복지과	211-4873	
▶ 목욕업 ▶ 이·미용업	식품의약과	211-5013	
▶ 학원 ▶ 독서실 ▶ 스터디카페	통합교육추진단	211-3665	
▶ 마트·백화점 ▶ 백화점·대형마트	소상공인정책과	211-3434	
▶ 직업훈련기관	각 소관부서	-	
▶ 종교시설	문화예술과	211-4514	
▶ 노인요양시설	노인복지과	211-4875	
▶ 요양병원	식품의약과	211-5044	
▶ 정신병원	보건행정과	211-4935	
▶ 콜센터	노동정책과	211-3464	
▶ 리조트·호텔·게스트하우스·민박 등(관광진흥법상)	관광진흥과	211-4616	
▶ 리조트·호텔·게스트하우스·민박 등(공중위생법상)	식품의약과	211-5013	
▶ 어촌체험마을(민박)	섬어촌발전과	211-6173	
▶ 농어촌민박	농업정책과	211-6255	
▶ 농촌체험휴양마을	농업정책과	211-6254	

끝.